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5년 상반기 공공재정 보조금분야 특정감사 —

2025. 7.



3. 처분요구일람표

1. 2024년 @@@@사업 지방보조금 정산처리 부적정 (시정)	3
2. 2024년 §§§§§§§§§§ 지방보조금 정산처리 부적정 (시정)	7
3. ※※※※※※※※※※사업 부가가치세 정산 소홀 (시정) .	11
4. 보조사업 정산소홀 및 예산비목 편성 부적정 (주의)	14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2024년 @@@@사업 지방보조금 정산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경북 관내 &&&에 대한 &&상담, &&&&& 지원, && 활동, &&&&& 교육 등 @@@@@@사업을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 @@@@사업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였다.

[표1] 2024년 @@@@@@사업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사업명	사업 기간	사 업 비			사업내용	교부결정 및 정산확정일	비고
			계	도비	자부담			
○○○○○ ○○○○○	2024년도 경북@@@@ @@@@사업	2024. 1월~12월	***,***	***,***	**,**	경상북도 @@@@@@ (상담, 홍보, 캠페인 등)	①최초 교부결정 (2024.00.00.) ②예산 변경 승인 (2024.00.00.) ③정산확정일 (2025.00.00.)	

* ☆☆☆☆☆과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①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③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¹⁾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단체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

1) 각항의 사유에 2개월 이내

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된 후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5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보수월액 각각의 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 비율2)에 따라 부담하게 되어 있다.

한편, 보조사업자인 ○○○○○○○○○○에서는 2024년 @@@@@@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 등 3명의 4대보험근로자 부담금을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보수지급 후 별도 ○○○○○○○○○ 통장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받아 아래 [표2]와 같이 당초 보조금 사업계획서 내에 보험금 항목 자부담으로 전용하여 납부하였다.

[표2] 2024년 @@@@@@사업 근로자 부담금 보조금 자부담 전용 현황

(단위 : 원)

구분	전용금액	내용	비고
합계	**,**,**	2024년 1월~12월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을 별도 통장에 지급받아 보험료 자부담으로 사용	
***	*,**,**		
***	*,**,**		
***	*,**,**		

* 보조사업자 제출자료 재구성

2) 50%(사업주) : 50%(근로자)

[표4] 2024년 @@@@사업 도비 보조금 반납액 산출 내역

(단위 : 원)

보조 사업자	사업비 집행 내역		보조금 정당 집행액 (당초 보조비율 반영)	보조금 반납액	비고
	구분	교부결정/집행액 (보조비율%)			
합계		X			
○○○○○ ○○○○○ ○○	보조금	X		*,**,***	
	자부담	X			

* 보조금 반납액 : *,**,***원 = 도비보조금(집행액) *,**,***원 - 당초 보조비율 반영한 보조금 정당 집행액 *,**,***원

**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미반납액
 *,**,***원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2024년 §§§§§§§§§§§§§§ 지방보조금 정산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과에서는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 등의 이행으로 &&를 && &&&&의 경쟁력을 제고와 && 또는 &&&&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 사업을 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하였다.

[표1] 2024년 §§§§§§§§§§§§§§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교부결정 및 정산확정일	비고
			계	도비	자부담			
◇◇◇◇◇ ◇◇◇◇◇	2024년 §§§§§§§§§§§§ §§	2024. 3월~12월	**,***	**,***	0	①1차 교부결정 **,***천원 (2024.00.00.) ②2차 교부결정 **,***천원 (2024.00.00.) ③3차 교부결정 **,***천원 (2024.00.00.) ④ 정산확정일 (2025.00.00.)		

* ♣♣♣♣과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①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③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단체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된 후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운영하여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교부, 집행, 정산, 중요재산, 공시 등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이에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관리를 위하여 보탬e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중복수급 검토, 보조사업자 자격검증,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부정수급자 관리, 부정징후모니터링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지출 요령에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통장내역, 지출결의서등 사용내역이 일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보조금 정산시 주요 지출항목별 체크리스트 주요 점검사항에 국내여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기준단가, 지자체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참고하여 교통, 숙박 등에 대한 집행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 @@@@ 과에서는 해당사업의 보조사업자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면 집행 내용을 심사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국내여비의 경우 교통비 등 출장증빙이 없을 경우 정산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지방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각항의 사유에 2개월 이내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산업협력단에서 2024년 §§§§§§§§§§§§ 사업 보조비목인 국내여비를 지출하면서 아래 [표2]과 같이 교통비 증빙 영수증을 중복 사용하여, 21건 ***,***)원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정산 승인하여 지방보조금법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한 정산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표2]2024년 §§§§§§§§§§§§ 보조금 국내여비 부적정 현황 및 보조금 반납액 산출 내역
(단위 : 원)

집행실행 일자	집행목적(용도)	지방비 집행금액	부적정 집행금액 (반납액)	부적정 사유	비고
합계	21건	*,***,***)	***,***)		
2024-00-00	X			교통비 중복	
2024-00-00				교통비 중복	
2024-00-00				교통비 중복	
2024-00-00				교통비 중복	
2024-00-00				교통비 중복	
2024-00-00				교통비 중복	
2024-00-00				교통비 중복	
2024-00-00				교통비 중복	
2024-00-00				교통비 중복	
2024-00-00				교통비 중복	
2024-00-00				교통비 중복	
2024-00-00				교통비 중복	
2024-00-00				교통비 중복	
2024-00-00				교통비 중복	
2024-00-00				교통비 중복	
2024-00-00				교통비 중복	
2024-00-00				교통비 중복	
2024-00-00				교통비 중복	
2024-00-00				교통비 중복	
2024-00-00				교통비 중복	

* 보탭e 증빙서류 및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 @@@@과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미반납액 ***,***원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사업 부가가치세 정산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 ▽▽에 대한 도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 사업을 아래 [표1]과 같이 추진하고 2024.00.00.에 실적보고서를 승인하였다.

[표1]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통계목	사업비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상태*		계	보조금	자부담
▽▽▽▽▽▽▽▽	%%%%%%%%	000-00-00	부가가치세	민간경상	**,**	**,**	*,**
▽▽▽▽▽▽▽▽	%%%%%%%%	000	일반과세자	사업보조	**,**	**,**	*,**

*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2025.05.16.기준)

「지방보조금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20조에 의하면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제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탬e운영가이드(행정안전부, 2024.4.18.)에는 보탬e에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정보 등록 시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신고여부를 'Y'(신고)로 선택하여야 하고, 부가세환급을 받는 집행건을 등록 시에는 사업비(보조금, 자부담)로 집행등록하지 않고, '사업비 제외금액 부가세'에 부가가치세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일반과세자 및 부가세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부가세신고여부에 Y(신고)로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아래 [표2]와 같이 부가세 환급을 받는 집행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사업비 제외금액 부가세에 입력하도록 하였어야 하고, 보탬e에 부가가치세 N(미신고)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실제 부가세 신고내역을 제출받아 아래 [표2]의 집행건에 대한 부가세 환급여부를 확인 후 환급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수입으로 계상하였어야 했다.

[표2] 사업비로 집행된 부가가치세 내역

(단위 : 원)

집행일자	집행방식	집행목적	집행금액			거래처명
			계	공급가액	부가세액	
합계	3건		X			
2024.00.00.	전자세금계산서	\$\$\$	X			\$\$\$\$
2024.00.00.	전자세금계산서	\$\$\$	X			\$\$\$\$\$
2024.00.00.	전자세금계산서	\$	X			\$\$\$\$\$

※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정산관리 내 집행내역 목록 조회 화면 재구성

그러나, ◆◆◆◆과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통한 일반과

세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보조사업자가 부가세를 사업비 제외금액으로 입력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지출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⁴⁾ 확인을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의 발생여부 확인 및 세입조치 등 별다른 조치없이 2024.00.00.에 실적보고서를 승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보조사업 부가가치세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환급금 등을 확인 후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4) 신고대상자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정확한 부가세 환급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요청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미 제출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사업 정산소홀 및 예산비목 편성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2024년에 \$\$\$\$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아래 [표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1] 2024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비		비고
			계	보조금	
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					사회복지사업보조
3					사회복지사업보조
4					사회복지사업보조
5					사회복지사업보조
6					사회복지사업보조
7					사회복지사업보조
8					사회복지사업보조
9					사회복지사업보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

업비 보조비목(편성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2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중복 수급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의2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 예산의 통지,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과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표1]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및 보탬e 예산비목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적정 비목이 아닌 경우 교부신청 및 집행 단계에서 사업계획서 보완,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을 통해 적정 비목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했다.

또한, 운영비에 해당하는 예산은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아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보조사업자가 보탬e로 지출한 예산비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집행목적, 내용 등과 상관없이 공공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사운영비로 편성 후 지출하였음에도 ▲▲▲▲▲과에서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을 하지 않고 정

산을 완료하였고,

[표2] 단일비목 사업 내역

연번	사업명	보조사업자	보탬e 지출 보조세목(통계목)
1	X	X	공공운영비
2			민간경상사업보조
3			민간경상사업보조
4			행사운영비
5			행사운영비
6			행사운영비
7			행사운영비

또한, 아래 [표3]과 같이 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아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잘못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자 또한 해당 경비를 운영비로 집행하였음에도 별다른 시정명령없이 정산을 완료하는 등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표3] 법정운영비에 해당하는 집행내역

연번	사업명	보조사업자	예산과목	법정운영비 해당 집행내역
1	X	X	사회복지 사업보조	X
2			사회복지 사업보조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